

의안번호	2205570
의 퇴 인	한기호의원
회 답 일	2024. 12. 30.
추 계 번호	24D5137

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국가 등이 기념사업회를 보조하는 경우, 추가 재정소요는 2025년 6억 5,400만원, 2029년 7억 8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4억 600만원(연평균 6억 8,1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기념사업회 보조 (안 제14조)	654	668	681	695	708	3,406	681

주: 1.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2.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기념사업회 보조(안 제14조)에 한하여 추계하고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함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조 (보조금 및 출연 등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15조 (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지방재정법」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22조(지원)	한국유격군 대원과 그 유족등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음	재량규정
4	부칙 안 제4조 (경비부담)	기념사업회의 설립경비는 국가가 부담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4조 (보조금 및 출연 등)	○	-
2	안 제15조 (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)	X	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으로 재정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, 대부항목, 항목별 평균 수입 감소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3	안 제22조(지원)	X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항목별 대상자 수, 평균 지원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4	부칙 안 제4조(경비부담)	X	기념사업회 설립 경비의 범위,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, 항목별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기념사업회 보조(안 제14조)에 한하여 추계
 - 유사사례인 국가보훈부의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지원사업을 활용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⁾
-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.10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%	2.5%	2.1%	2.0%	2.0%	2.0%	2.0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국가보훈부의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제정안에 따른 기념사업회 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
 - 국가보훈부에 따르면,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지원 중 기념사업과 사업회 운영을 지원하는 비용은 2024년 예산 기준 각각 2억 9,000만원, 3억 5,100만원으로 총 6억 4,100만원
 - 이외에 대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지원하는 내용에 1억 5,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제정안은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제외함
 - 국가보훈부의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사업 및 운영 지원금액에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
- 추계결과, 제정안에 따라 국가 등이 기념사업회를 보조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5년 6억 5,400만원, 2029년 7억 8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4억 6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기념사업회 보조	654	668	681	695	708	3,40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